

「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03월 07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6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7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2년 3월 1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과장)

가. 제안이유

2022년 기준인건비 승인 인력 정원을 반영하고, 보건의료원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원장 직급채정 협의 결과반영 및 부서와 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반영을 위해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기구 조정 현황

현 행	개 편	비 고
본청 2국 1실 15과(89담당)	본청 2국 1실 15과(89담당)	-
직속기관 5과(29담당)	직속기관 6과(32담당)	+1과/+3담당
2사업소(4담당)	2사업소(4담당)	-
의회(1담당)	의회(1담당)	-
8읍면 1출장소(38담당)	8읍면 1출장소(38담당)	-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남섭)

○ 본 조례안은

2022년 평창군 기준인건비 승인 인력 정원을 반영하고,
전염병 발생과 의료서비스의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
건의료원 업무기능을 강화하며,
보건의료원장 직급 조정(4~5급→4급)과 직속기관
기구조정(5과(29담당)→6과(32담당))으로 1과 3담당을 신설하는
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것임.

○ 주요내용은

안 제8조제1항은 보건사업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변경하고
건강증진과장을 신설하는 것이며

안 제8조제2항과 제9조제2항은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
변경하는 것으로

○ 검토결과

보건의료원에 대한 조직개편은 전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지원 강화에
목적이 있지만 향후 시설운영과 인력수급 등에 대한 장기적인
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보건사업과장”을 “보건정책과장, 건강증진과장”으로, 같은 항 및 제2항 중 “보건진료원”을 각각 “보건진료소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보건진료원”을 “보건진료소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보건사업과장”을 “보건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②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보건사업과장”을 “건강증진과장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의료원장 등)</p> <p>① 의료원에 원장 및 <u>보건사업과</u>장, 진료지원과장을 두며, 보건지소에 지소장,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, 보건진료소에 <u>보건진료원</u>을 둔다.</p> <p>② 원장은 군수의, 과장, 지소장, 센터장과 <u>보건진료원</u>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</p> <p>제9조(소관사무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보건진료원</u>은 관할구역 안에서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.</p>	<p>제8조(의료원장 등)</p> <p>① ----- 보건정책과장, 건강증진과장----- ----- ----- 보건진료소장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보건진료소장----- ----- -----.</p> <p>제9조(소관사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보건진료소장----- ----- ----- -----.</p>